

서울고등법원
변 론 조 서

1차

사 건 2005나84701 교수지위확인

재판장 판사 박 홍 우 기 일 : 2006. 5. 26. 17:00

판 사 이 정 렬 장 소 : 서관 305호

판 사 이 우 철 공개 여부 : 공 개

법원 사무관 이 의 봉

고지된
선고 기일 : 2006. 6. 16. 14:00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

원고(항소인) 김명호 출석

피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일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수령 출석

재판장 판사

원고의 2006. 5. 18.자 변론의 녹음신청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은 이유로 이
를 기각한다는 결정 고지하고, 원고가 제출한 항고장에 기재된 내용은 항고
대상이 아님을 고지

원고의 교수지위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제1회 변론준비기일에서 소취하에 관
한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청구를 유지하고 법원이 판단하기로 하였
으므로 제1회 변론준비기일조서 내용에 잘못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쌍 방

변론준비기일 결과 진술

원 고

2006. 5. 19.자 준비서면 진술

재판장 판사(원고에게)

문 : 갑제29호증의 1내지33으로 제출된 답안지 중 일부는 년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부 1995년 1학기 답안지인가요

위 등본입니다
2006년 6월 20일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이의봉



답 : 예.

문 : 강제30호증의 1내지3으로 제출된 강의출석부에 기재된 숫자는 무엇인가요.

답 : 그것은 퀴즈 점수입니다. 0인 것은 0점이라는 얘기이고, 맨 위에 있는 1주·2주·3주에 기재된 숫자는 만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퀴즈점수 내지는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점수입니다.

원 고

다음과 같이 진술

1. 재임용관련소송으로 1977. 9. 28. 77다 300의 경우 '재임용관련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교수로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다시 재임용 예정되어 진다고 보아진다'고 판결하였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변경된 예가 없으므로 위 판례에 반한 판결은 위법판례이다

1. 원고의 재임용탈락이 95학년도 성대입시 출제오류지적에 대한 보복이며, 피고의 석명사항에서도 성적평가에 의해서 징계 또는 재임용 탈락한 예가 없다고 분명히 답변하였다

1. 대법원 2000. 6. 9. 98두 16613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이 재량권한계를 벗어난 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에 어긋난다.

1. 원고의 재임용탈락사유는

첫째, 징계사유설명서 중 입학시험채점시 배타적인 태도로 혼란을 야기했다는 것. 둘째, 성대수학과와 수학교육과 교수에 의한 허위증언으로 입시 출제오류지적이 해교행위라고 하면서 정직 3개월에 처했다고 하는 증언서류를 냈다는 것. 셋째, 징계의결요구를 했던 수학과 김미경 교수의 녹취록이다.

쌍 방

소송관계 표명, 증거조사결과 변론

변론종결

법원 사무관

이 의 봉



재판장 판사 박 홍 우



원근

별지 이의신청서 기재와 같이 본 조서 기재에 관하여 이의

2006. 6. 5.

법원사무관 이 이 봉



재판장 판사 박 홍 우



2006. 6. 5.

정수행변리

★ 이디봉사무안군 폐교해제위원회

1. 조수지위확인

① 조수지위확인 = 재인용기록영장 및 압속
부인 + .

② 봉사. · 77다300의 피방원 판례

③ 양송지

가. 77다300의 방종처부 변경결정서, 방원택 1호1항의
위 정한 정원판례에 위배하는 위법행위

나. 조수지위 확인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봉사는 판정유기이신
방종. 명에게도 아닌 선제구속권이 있는 명에게도
해당할 수 있고, 더욱이 유죄는 피종제

2. 원리의 재인용 판적이 95년도 성대방시 총재 오류 지적에 대한 보복.

비밀. 지난 회리 석명사항 비서

(~~1심판결 피소사유가~~)
성명평가 장본으로 장제나 재인용 판적이 없음

홍수민사 98두 16613 사법각료 로인의 정제처분이
피방원 2000. 6. 19 재판판결을 벗어난 것임

1심판결 피소사유가
재판판결을 벗어난
95년도 성대방시 총재 오류 지적에 대한 판적이 없음

⇒ 원리 재인용 판적이 없음. 1심판결 피소사유가
성명평가로 인해

위디 정제사실이 없음 것임

① 정제 정제사유 성명평가를 임할 시 권 해할 시 비정적 때 드르 판

② 성대 수각라 조수들의 ~~판~~ 입시 총재 오류 지적에 대한 판적이 없음

③ 정적 3월 1회 회리 판례는 차변

2

조서 이의 신청서

사건 2005나84701 교수지위확인(서울고법 민사 제2부 나, 박흥우 부장판사)
원고 김명호,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415, 중앙하이츠빌 105동 1504호
(휴대폰:010-5590-8913)

피고 학교법인 성균관 대학, 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 53 이사장 권이혁

위 당사자간 교수지위확인 사건의 변론기일조서(5월 26일) 관련하여,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조서에 대한 이의)에 따라,
변론조서와 실제 변론에 차이 등의 사유로 이의 신청합니다.

이의 사항들

자세한 것은 5월 26일 자 실제변론(입증자료1)과 변론조서(입증자료2)를 비
교 참조.

1. 변론 조서에 누락된 중요 내용

가. 양승태 대법관 판결을 인용할 필요가 없다는 변론 진술
(입증자료3)

“(지난 3월 9일)양승태 대법관의 판결은 사립학교법 해석을 변경한 것
으로, 법원조직법 제7조 1항의 3이 정한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않은
위법판례인 것입니다.

양승태 대법관은 그 판결에서 교수지위확인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
다는 법리를 주장하였는데, 그 법리는 판결이유가 아닌 방론으로서, 선
례구속력이 있는 영미계에서도 따를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대륙계로서 더더욱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나. 피고 성대의 재판지연 추가증거

“먼저 피고 대리인은 소송위임을 지난 2005년 10월 26일 받았습니다

60907



만, 4개월 가까이 지난 2006년 2월 21일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은 피고측의 소송지연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증거인 것입니다.”(입증자료4)

2. 사실과 다른 곳

<변론조서>

재임용관련 소송으로 1977. 9. 28. 77다300의 경우, '재임용관련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교수로서 하자가 없는 한 다시 재임용 예정되어 진다고 보아 진다'고 판결하였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변경된 예가 없으므로 위 판례에 반한 판결은 위법판례이다.

[실제변론]

교수지위확인의 법리에 대한 것입니다.

교수지위확인은 재임용 거부 결정무효가 되면 당연히 따라와야 합니다.

그 이유는 대법원 최초의 재임용 판례, 1977년 9월 28일 선고 77다300에 기인합니다.

그 판례에 의하면 재임용관련 사립학교법 해석이 있는데, '대학교수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재임용이 예정되고 있다고 보아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77다300에서의 법률해석은 합법적으로 변경된 바가 없으며, (지난 3월 9일)양승태 대법관의 판결은 사립학교법 해석을 변경한 것으로, 법원조직법 제7조 1항의 3이 정한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않은 위법판례인 것입니다.

<변론조서>

원고의 재임용 탈락사유는

[실제변론]

원고의 재임용 탈락이 95년도 성대입시출제오류지적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증거들은

3. 빠진 부분들

첨부된 5월 26일 자 실제변론(입증자료1)과 변론조서(입증자료2)를 비교 참조하기 바랍니다.

결론

5월 26일자 변론기일조서 수정을 요청합니다.

입증자료

1. 5월 26일자, 실제변론
2. 5월 26일자 변론준비기일 조서
3. 제출된 5월 26일 변론 메모
4. 피고 성대의 위임장

2006년 6월 5일

위 원고 김명호



서울고등법원(민사 제2부 나) 귀중

5월 26일자 변론기일 변론

오후 5시, 법정에서 2005 나 63650(3시 예정) 증인신문 진행 중
속기사가 증인과 질문자이외의 발언에 대하여는 타이프 치지 않음.
재판장 발언, 불속 끼어든 방청객과 재판장의 경고 등은 기록하지 않다.

위 사건이 끝나고 그 다음 3시(또는 3시반) 사건 진행되리라는 생각하에 밖
으로 나왔더니 법정 안내인이 지금 시작하니 들어 가란다. 이번에 온 피고
성대측 변호사는 최수령.

박홍우 재판장이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요약하려 듯이 두리몽실 뭉뚱거린
다.

[원고] 재임용 거부 결정무효라는 주장을 하였고,
재임용거부 무효결정에 교수지위확인을 추가하였고, 개정법을 적용해야 한
다..
피고 성대가 재량권 남용을 하였다...

[피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그리고 답안지 보관과 성적평가서가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주: 피고는 1-2심 재판 통틀어 재판장이 묻는 말외에 입을 연 적이 없
다.)

나:"재판장님, 재임용 거부 결정무효확인에 교수지위확인을 추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박:"녹음기 있습니까?"

나:"없습니다."

박:"변론녹음 신청은 지난번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
어방법 각하신청은 항고 대상이 아닙니다."

나: "(항고 대상이 아니라는)근거 법규정이 무엇입니까?"

박:"법을 찾아보세요"

나:"없습니다."

박:"법률서적 찾아보세요"

나: "(방어방법 각하신청이 항고대상이 아니라는 근거 규정이 법률서적에도)

없습니다."

(주: 민사소송법 제 439 조에는 항고대상이라 명시)

박:"조서 이의신청은 기록에 철하겠습니다."

나:"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판사님이 교수지위확인과 재임용 거부결정무효확인
이 같은 것이니 하나로 하자고 하며 청구취지를 교수지위확인 하나로 했
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박:"두 개로 하기로 했습니다."

나:"그런 적 없습니다."

박:"지금이라도 하나로 바꾸면 됩니다."

나:"저는 처음부터 청구취지를 교수지위확인과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으로
해왔고 판사님이 말씀하신겁니다. 저보고 수학해서 논리적일 텐데 교수지위
확인과 재임용거부결정은 같은 건데, 하나되면 나머지 하나는 따라오는 거라
며, 판사님이 상식적으로 하나로 하자고 하셨는데... 양승태 대법관의 판결을
보고 생각이 달라지신 거 아닌가요?"

박:"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다른 거 하다가 얘기가 나와서 따로 판
단하기로 했습니다."

나:"어디에서 따로 하자고 했나요? 저는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에 대한 사
실심리하에 교수지위확인을 판단준다는 조건하에 판사님의 청구취지를 하나
로 변경하자는데 동의했는데, 그 얘기가 어느 부분에서 다시 거론이 되었다
는 말씀인가요?"

박:"처음에는 하나로 했다가, 그 후 문서 제출명령에서..."(거짓말 ???)

나:"어떻게 교수지위확인과 문서제출명령이 관계가 있나요?"

이 사건의 본질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그 실수를 알면 정정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대 본고사에서도 입시문제 출제오류를 할수 있고 잘못을
인정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판사님도 처음에 잘못 판단하셨다가 나중에 양
승태 대법관 판결을 알고 나서 두 개를 따로 판단해야겠다고 말씀하시면 저
는 받아들여겠습니다."

박:"교수지위확인과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 두개를 따로 판단하기로 했습니
다."

나:"(더 이상 다뤄보아야...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그만 하겠습니다."

(참조: 4월 7일 문서제출 명령 부분)

박:"원고가 제출한 답안지에 95년도 1 학기인 것 같은데 어떤 것은 그 것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맞나요? (이의봉 사무관에게 건네주며)보여주세요"

나:(이의봉 사무관이 보여준다)"이 백지 답안지는 (4 학년 위상수학 학기말
시험)95년도 1 학기 맞습니다."

박:"그리고 94 년도 1 학기 출석부에 있는 이 숫자들과 동그라미가 무엇인가요?"

나:"아, 그것은 퀴즈점수로서 영점을 받았다는 겁니다. 위에 1 주, 2 주....에 써있는 숫자는 퀴즈의 만점 표시고, 그리고 퀴즈이외에 중간고사 학기말 고사 점수도 적은 겁니다."

박:"그럼 종결하겠습니다."

나:"할 말이 있습니다. 먼저 피고 대리인은 소송위임을 지난 2005 년 10 월 26 일 받았습디만, 4 개월 가까이 지난 2006 년 2 월 21 일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은 피고측의 소송지연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의봉 사무관을 바라보며) 이의봉 사무관님,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수지위확인 의 법리에 대한 것입니다.

교수지위확인 은 재임용 거부 결정무효가 되면 당연히 따라와야 합니다.

그 이유는 대법원 최초의 재임용 판례, 1977 년 9 월 28 일 선고 77 다 300 에 기인합니다.

그 판례에 의하면 재임용관련 사립학교법 해석이 있는데, '대학교수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재임용이 예정되고 있다고 보아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77 다 300 에서의 법률해석은 합법적으로 변경된 바가 없으며, (지난 3 월 9 일)양승태 대법관의 판결은 사립학교법 해석을 변경한 것으로, 법원조직법 제 7 조 1 항의 3 이 정한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않은 위법판례인 것입니다.

양승태 대법관은 그 판결에서 교수지위확인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법리를 주장하였는데,

그 법리는 판결이유가 아닌 방론으로서,

선례구속력이 있는 영미계에서도 따를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대륙계로서 더더욱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중간에 잠깐 숨을 고르는데, 피고 최수령 변호사가 '앉아서 들어도 되나요?'

박홍우 판사 허락)

둘째: 원고의 재임용 탈락이 95 학년도 성대입시 출제오류 지적에 대한 보복 지난번에 제출된 피고의 석명사항(다)에서 성적 평가 잘못으로 징계나 재임용탈락한 교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것은 대법원 2000. 6. 9. 선고 98 두 16613 의 판시사항,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이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

단기준으로 부터,
피고가 원고를 징계한 것이 위법함이 밝혀진 것이요, 1 심 판결의 패소사유
가 근거없음을 말하고 있고,

지난 기일에도 진술했던, 3 가지 증거

- (1) 징계사유설명서 중 '입학시험 채점시 배타적 태도로 혼란야기'
- (2) 성대 수학과 및 수학교육과 교수들의, '입시출제오류지적이 해교행위라
생각하여 학교당국이 정직 3 개월을 한바 있다'라는 자백 증언
- (3) 징계의결 요구한 수학과 김미경 교수의 (입시출제오류지적이 징계의결요
구의 결정적 사유임을 시인한) 녹취록

와 함께 원고의 책임용 탈락이 95 년도 성대입시출제오류지적에 대한 보복이
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위의 진술은 재판 중 메모한 것을 보며 한 것. 박흥우 재판장이 메모한 것
을 가리키며)

박:"그거 제출하세요."

나:"저도 필요하니 복사해 갖다드리겠습니다."(최후 진술 후 복사한 것 재판
안내인에게 건네주고 안내인이 이의봉 사무관에게 갖다 주는 것 확인)

박:"종결하고 선고는 6 월 16 일 오후 2 시입니다. 종결하는데 피고는 할 말
있습니까? "

피고:"없습니다."

나:"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재판은 쌍방간의 공격, 방어에 대하여, 판사님이 누가 더 점수를 댄가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제 경
험으로 보면, 판사님들이 상대방이 주장도 하지 않은 사실들로 부터 판단을
하는 등 어느 한 쪽을 편들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장님, 제발 법과 규칙에 의해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